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58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 1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58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5호, 2021.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건을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조치를 명문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축산물에도 우수수입업소가 적용됨(‘22.12.11.시행)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수입 영업자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조치 규정 명문화(안 제3조제2항 ~제5항 신설)
- 나.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신설(안 제21조 신설)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rangz@korea.kr
 -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3) 팩스 : 0502-604-5935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5호, 2021.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행규칙 별표 9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보완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 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동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이전에 상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 실시된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전산망으로 확인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이후 다시 수입신고 하였을 때 이 검사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 신고된 축산물이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을“(표시기준 등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별표 7.Ⅱ.1.차.”를 “별표 7.Ⅱ.1.카.”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한 해당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에 관하여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및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입 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수입 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p> <p>② 시행규칙 별표 9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 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 거나 지방청장이 보완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 신고 받은 지방청장 은 동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정 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이전에 상기 정밀검 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 실시된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p>

<신 설>

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물학적 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전산망으로 확인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이후 다시 수입신고 하였을 때 이 검사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 신고된 축산물이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별표 7.Ⅱ.1.차.)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위반
사항 보완 여부

②·③ (생략)

제16조의2(해외작업장에 대한 시
정조치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
장의 설치·운영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
부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
품안전처장과 협의된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별표 7.Ⅱ.1.카.-----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해외작업장에 대한 시
정조치 절차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한 해당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에 관하여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
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1조 (생략)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